

상담사례집 ① 산업재해

"산재 같은거 해당 안됩니다."



펴낸 때 : 2001년 6월 1일

펴낸 곳 :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펴낸 이 : 관장 이 금 연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 <430-014>

전 화 : 031) 443-444-2876 팩스 : 031) 446-2876

홈페이지 : www.kafi.or.kr

이메일 : kafi@kafi.or.kr/aycc@chollian.net

후원구좌 : 신한은행 603-02-197795 예금주 이금연

외환은행 069-19-42796-3 예금주 이금연

안양 전·진·상 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은 1993년 1월부터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민족, 문화, 종교와 인종, 언어를 초월하여 이 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 인류평화에 이바지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 ◎ 노동상담 및 생활상담 - 임금체불, 산재, 작업장내 폭행, 사망, 출입국, 성폭행, 가족문제
- ◎ 교육활동 - 한글, 컴퓨터, 노동법, 성교육
- ◎ 종교활동 - 타종교와의 대화, 복음나누기
- ◎ 의료상담 및 의료공제회 운영
- ◎ 국가별 공동체 활동지원 - 필리핀주부 한글교실, 네팔가족모임(네코), 네팔문화 및 스포츠팀, 방글라데시 모임
- ◎ 국내외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MFA(Migrant Forum in Asia), AMC(Asia Migrant Center), 이주·여성인권연대(Human Rights Solidarity for Women & Migration), 가나가와 시티유니온(일본)

안양이주노동자의집



“노동의 목적은 항상 인간인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일할 운명을 타고났고 소명을 받았다 해도 우선적으로 노동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의 주체, 즉 ‘일을 성취하는 개인’인 그 인격체의 ‘존엄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노동은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황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 중에서』

손 무 덤

박 노 예

을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영의
손목이 날아갔다

작업복을 입었다고
사장님 그라나다 승용차도
공장장님 로얄살롱도
부장님 스텔라도 태워 주지 않아
한참 피를 흘린 후에
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을 갔다

기계 사이에 끼어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기름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어
36년 한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잊는다
비닐봉지에 쌈 손을 품에 넣고
봉천동 산동네 정영 집을 찾아
서글한 눈매의 그의 아내와 초롱한
아들놈을 보며
차마 손만을 꺼내 주질 못하였다

훤한 대낮에 산동네 구멍가게 주저앉아 쇠주병
을 비우고
정영이 부탁한 산재관계 책을 찾아
종로의 크다는 책방을 둘러봐도
엠병할, 산데미 같은 책들 중에
노동자가 읽을 책은 두 눈 까뒤집어도 없고

화창한 봄날 오후의 종로거리엔
세련된 남녀들이 화사한 봄빛으로 훌러가고
영화에서 본 미국상가처럼

외국상표 찍힌 윗갓 좋은 것들이 휘황하여
작업화를 신은 내가
마치 틸출한 죄수처럼 풀드만

고층 사우나빌딩 앞엔 자가용이 즐비하고
고급 요정 살롱 앞에도 승용차가 가득하고
거대한 백화점이 넘쳐흐르고
프로아구장엔 함성이 일고
노동자들이 칼처럼 곤두세워 쫓빠져라
일할 시간에
느긋하게 즐기는 년놈들이 왜이리 많은지
-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
선진조국의 종로거리를 나는 ET가 되어
얼나간 미친 농처럼 예매이다
일당 4,800원짜리 노동자로 돌아와
연장노동 도장을 찍는다

내 풍속의 정영 손은
싸늘히 식어 푸르뎅뎅하고
우리는 손을 소주에 씻어 들고
양지바른 공장 당벼락 밑에 묻는다
노동자의 피땀 위에서
번영의 조국을 향락하는 누런 착취의 손들을
일 안하고 놀고먹는 아yan 손들을
묻는다
프레스로 썩둑싹둑 짓짤라
원한의 눈물로 묻는다
일하는 손들이
기쁨의 손짓으로 살아날 때까지
묻고 또 묻는다

차 래

발간사 .. 7

프롤로그 .. 8

제1부 결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 9

1. 최대한 붙여주세요 .. 11
2. 아악, 빨리 .. 11
3. 산재같은 거 해당 안됩니다 .. 12
4. 어디 도망이라도 가든지 해야지 .. 13
5. 알라를 걸고 맹세하라 .. 14

제2부 노동부진정 · 오양 신청하다 .. 15

1. 노동부 1차 출석 .. 17
2. 합의하고 끌내자고요? .. 17
3. 우린 똑같은 인간이지요 .. 18

제3부 가압류신청, 합의에 이르기까지 .. 21

1. 책임을 피하려 들지 말라 .. 23
2. 가압류관련 상담진행일지 .. 23
3. 근로복지공단 대질조사 .. 24
4. 4개월만의 최초오양 승인 .. 25
5.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바란다 .. 25
6. 보험급여의 신청 .. 25
7. 평균임금의 정정 신청과 손목수술 .. 26
8. 합의합시다. .. 27

에필로그 .. 28

참고자료 .. 31

말간사

안양 전·진·상복지관 관장 이 금연

'노동은 사랑의 표현이다'

삼십년 전, 이 모토로 우리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은 정말 사랑의 표현일까요?

먼지와 소음가운데 하루 열시간 혹은 열두시간 동안
똑같은 동작의 작업을 빨리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

그들이 일 할 수 있는 힘과 동기는
어디에서 나올까? 물었습니다.
'사랑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은 손가락이 절려 나가고
다리를 잊으며 때로는 죽음을 맞기도 하며 그 혹독한
노동의 시간을 견디어 냈습니다.

스리랑카 여성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지요?'

'열두 시간 일하는데 어떤 날은 밤에 12시, 1시 까지 일해요'.
그녀의 눈은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악수를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 사람의 손은 온전한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진
거룩한 손이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지.....

기쁨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는 없는가? 를 되물으며 산업재해로 '노동의 인간화'가
빛바랜 물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하나를 사례집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 이 사례의 해결을 위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작하여
때론 치미는 분노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끝까지 마무리를 한
'박정관' '이순희' '이준복'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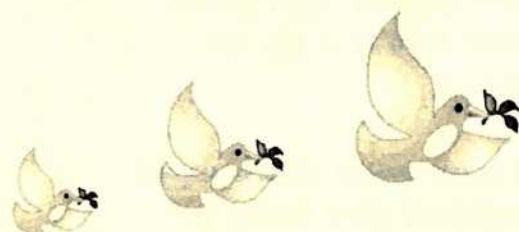
프롤로그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1년, 10여 년이 지난 2001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십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산업기술연수생, 현지법인 연수생 또는 미등록 노동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업종에서 노동하고 있다.

본 사례는 제조업체(플라스틱 사출 성형, 자동차부품생산)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파키스탄 국적의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상담과정이다. 조금은 거칠더라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는 이 사례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아픔과 노동현실, 이들을 둘러싼 사회환경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 사례의 상담을 접한 첫날부터 본인들 실무자 두 사람(박점관, 이순희)은 안타까움, 슬픔, 분노, 절망, 그리고 기쁨과 보람까지..... 인간의 모든 부정적, 긍정적 감정들을 느끼며 상담을 진행하였다. 사례집을 엮으면서, 지난 1년을 회고하는 일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결과를 판가름할 수 없었던 선택의 순간들이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왜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상담진행에 박차를 가하곤 하였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산업재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각 상담소 신규 실무자들에게 안내서가 되기를 바라고,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나아가서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하여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 병원 관계자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는 참고자료가 되며, 아직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상을 접해보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이들의 삶을 알리는 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상담진행동안 협조 해주신 모든 외국인노동자 동료들, 자원봉사자로 수고해준 이준복 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 1부

곁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제1부 결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1. 최대한 불여주세요(2000. 3.22)

출근길에 후센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파키스탄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지난 해 가을 안양대학교에서 열린 축구 대회때 보았었다. 후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에 인천의 공장에서 파키스탄 사람이 일을 하다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있다며 지금 우리 사무실로 오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여러 해를 살고 있는 후센 씨는 한국말을 익숙하게 하고, 지금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예쁜 딸을 낳았다.

후센 씨와 함께 서둘러 다친 이가 입원해 있다는 인천성모자애병원으로 가니 벌써 파키스탄인으로 보이는 서너 명이 와 있었다. 5층의 한 병실에, 큰 키에 이목구비가 또렷한 이가 원손에는 붕대를 칭칭 동여매고 두 눈은 꼭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수술을 집도할 전문의가 도착하자 그가 누운 베드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황급히 수술실로 옮겨졌다.

“선생님, 불일 수 있으면 최대한 불여주세요”

“조직이 손상된 건 어쩔 수 없소.”

2. 아악, 빨리

이번에 이 사람은 어느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또 저리 끔찍이 다쳤을까. 30만 명이 넘는다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거의가 말 그대로 더럽고·위험하고·어려운 3D현장에서 일한다. 노후된 기계, 지저분한 작업장, 장시간의 노동으로 피로는 쌓여만 가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제공되어지는 이들의 노동은 때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곤 한다.

그도 그랬다. 한땐 같이 일하다가 지금은 그 공장 근처에 살고 있다는 라주 씨로부터 후센의 통역 도움을 받아 사정을 들었다. 어젯밤도 그는 어김없이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야간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1999년 5월 입사한 이래 계속해서 야간조로 다음날 아침 8시 30분까지 매일 그렇게 일하고 있다. 함께 일했던 라주 씨가 지난 2월말 퇴사한 이후 줄곧 혼자서 하고 있는 야간작업이었다. 낮엔 둘이서 일하는 기계에 밤에는 혼자서 작업하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었으나, 플라스틱 사출기의 도어를 열고 물건을 꺼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원래 도어를 열면 기계는 정지하도록 되어있다.

밤 12시나 되었을까? 도어를 열고 물건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원손이 수 톤의 무게로 짓누르는 압착기 사이에 끼고 말았다. 아악. 빨리... 순식간에 원손은 만신창이

가 되어 붉은 선혈은 끝없이 흘러 내렸다. 그러나 옆엔 아무도 없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한참을 소리친 후에 주간 조를 마치고 자고 있던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밧을 깨울 수 있었다. 그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밧에게 라주 씨의 핸드폰 번호를 눌러 달라고 하여 연락을 취했다. 마침 근처에 살고 있던 라주 씨가 뛰어와서 다친 손을 작업복으로 동여매고 공장을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던 것이다.

3. 산재 같은 거 해당 안됩니다.

사장님을 만났다. 어젯밤 대학 동창회에 나가 친구들과 한잔하고 있는데, 다쳤다는 얘길 듣고 황급히 달려왔다고 했다. 침통한 표정의 사장은 얘기가 시작되자 대뜸 분명 졸거나 딴 생각을 하다가 다쳤을 거란다.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어렵다고 했다. 공장도 철거지역이라 옮겨야 하고, 요 사이 납품하던 회사가 회청거려 납품을 해도 수금이 안된다. 그래서 공장임대료나 전기세도 못내는 형편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며 죽을 맛이라고 한다. 술한 사장들을 만나지만 만나는 사람들 옆에 예닐곱은 형편이 비슷했다.

이들은 대개 대기업으로부터 몇 차례 이어지는 하도급의 마지막 단계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들이다. 그러기에 사장이라지만 생산라인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주와 납품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모 기업의 횡포나 자본융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빈도가 높은 이런 영세 사업체에서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을 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무능한(?) 사업주를 믿고 성실히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임금체불 등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침해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아무튼 수술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직원이 꽤 여러 명 일하고 있다고 하던데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겠지요?”

“우린 산재 같은 거 해당 안됩니다. 그거 5명 넘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린 거의 일용직 들이라... ...”

“그래도 산재 가입 대상에는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돈도 많이 들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도 해야 하기에 별 효용이 없다고 사장은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장에게 한참을 설명하고 나서, 이번 기회에 산재 보험 가입을 통해 다친 이의 병원비나 보상관계를 풀어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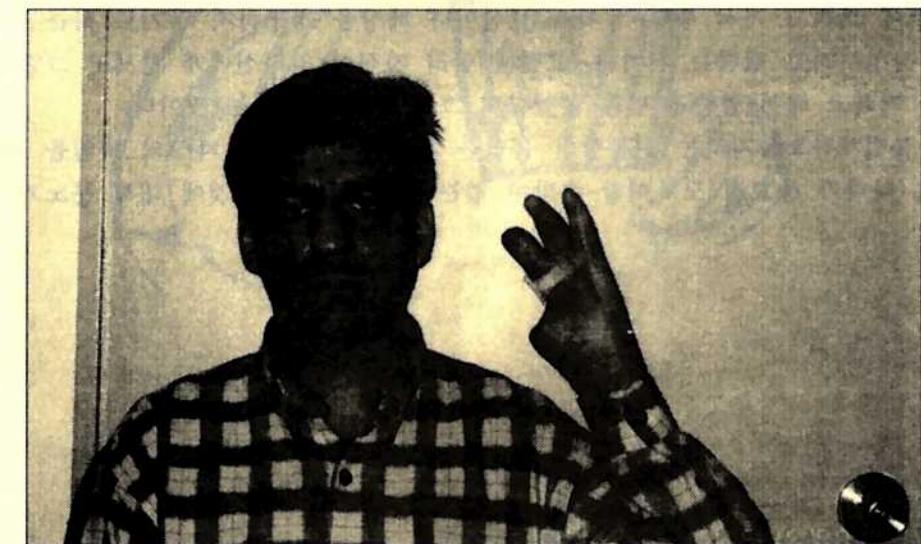
4. 어디 도망이라도 가든지 해야지

지난 번 산재가입을 하겠다는 사장의 약속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주에게 수 차례 연락했으나,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만날 수 없었다. 그러던 지난 4월 4일, 사장을 만나기로 하여 공장 주소지를 찾아갔다. 인천과 부천 중동 사이에 위치한 공장 부지 일대는 한참 철거가 진행중이었다. 널부러진 건물잔해, 온갖 쓰레기들, 황량한 철거 지역에 몇 안되는 공장만이 남아 있었고, 그 중에 알리가 일하던 공장이 있었다. 사장은 한 20여일 후에 공장을 옮길 거라 했다.

함께 병원을 찾아가 알리를 만났다.

“앗살라 무 알라이 쿰” 파키스탄 인사말로 악수를 청했다. 절망적인 눈빛의 그는 힘들게 자신의 손가락을 동여맨 봉대를 풀었다. 그의 왼손이 나타났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은 아주 깊숙이 잘려 나갔고, 마지막 마디가 절단된 채 봉합한 중지와 약지, 소지는 통통 부어 올라 움직이지 않았다.

여느 이주노동자처럼 그도 파키스탄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고학력 소지자였다. 그러나 조국 파키스탄에서는 마땅히 일할 곳이 없었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고자 이주노동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1999년 5월 이곳 한국으로 왔다며 유창한 영어로 얘기를 이어갔다. 아직 한국이 아주 낯설고, 이번 일로 걱정이 많다며 도움을 청했다.



무뚝뚝한 인상, 거친 말투의 담당 의사는 최선을 다해 수술했으나, 절단된 손가락은 조직이 심하게 망가져서 부득이 절단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치료를 해야 할거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에서는 치료비가 입원당시 100만원의 보증금을 초과했으므로 이 시점에서 중간정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함께 간 사장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정산하고 큰 한숨을 쉬며 또 죽겠다고 한다. 어디 도망이라도 가든지 해야지 안되겠다는 사장의 말에 습관적으로 긴장(?)을 하며, 산재 가입 절차를 설명하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을 건네고 돌아왔다.

5. 알라를 걸고 맹세하라

계속 전화를 걸어도 사장과 통화하기가 참 힘들었다. 정말 도망간 것일까 생각이 들 정도였던 5월 9일. 어렵사리 이루어진 통화에서 어찌되었냐고 물어보니 태도가 그전과 달랐다. 알아서 해줄 테니 기다리라고만 할뿐이다. 아직 환자가 치료중인데 장해보상관계를 논하기도 뭐하다 싶고, 공장이전 때문에 바쁘다는데 이해해야지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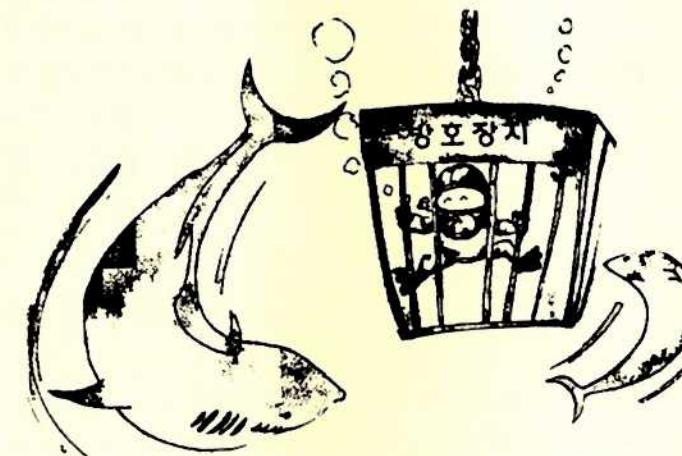
본인에게서 소식도 없고, 병원에 가 본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입원 병실을 찾았으나 환자는 이미 퇴원하고 난 뒤였다. 환자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이유로 일반으로 산정 된 1달 보름동안의 병원비는 800만원에 육박했고, 사장은 병원 사회사업팀의 도움을 얻어 40% 정도를 감면 받았다고 했다.

사장과 통화가 되었다. 이놈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로 사장의 얘기는 시작되었다.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인 지위를 가진 알리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강제 출국시키려고 했으나 아직 치료중인 관계로 여의치 않자, 2차로 법무사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향후 일체의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리 자신이 알라신에게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해서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 알고 있으라는 것이다.

소위 불법체류노동자라는 신분상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하고, 나아가 종교적 모독이랄 수밖에 없는 행태를 저지른 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었다.



제 2부 노동부 진정·요양 신청하다.



제2부 노동부진정 · 요양 신청하다

자세히 상담한 결과 알리는 다치기 전달인 2월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재해 발생일에 이르는 임금도 받아야 할 입장이다. 또한 매일 저녁 19:30부터 익일 08:30에 이르는 근로시간에 비추어 검토해 본 결과 월 급여 750,000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체불임금 등과 함께 노동부진정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요양신청을 준비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이름만을 알고 있는 단계에서 공장은 이미 옮겨져간 터라, 서둘러 현재 일하고 있다는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를 통하여 이전한 공장이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하고 있음을 어렵사리 알아내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담아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고, 같은 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반입증서류를 붙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요양신청서류를 제출했다.

노동부진정내용

1.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0. 2월 임금과 재해 발생시까지의 해당임금 및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법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의법조치하라
3.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

1. 노동부 1차 출석 (2000. 5. 29.)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노동을 하다가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에게 통역을 의뢰하여 본인과 함께 1차 출석요구에 응했다. 역시나 사업주는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지급임금, 최저임금법에 기초한 미지급 임금분, 월차휴가 수당 등에 대해 본인진술만을 행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2. 합의하고 끝내자구요? (2000. 6. 15.)

2차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대질조사를 할 계획이므로 입증자료와 증인을 대동하여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당시 2월까지 함께 일했었고 사고당일 병원에 데리고 간 라주 씨와 함께 출석에 응했다.

그런데 쟁점이 생겼고,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것이다. 공장장(관리자) 1명과 2명의 외국인만이 정규근로

자이고, 아줌마들은 모두 일용직으로 필요할 때 가끔 와서 간헐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자신은 2,3월분 임금만 지급하면 그만 이라는 것이다.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없다는 법령상의 기준을 사장은 알고 있었다. 더구나 진정인측이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기에 더욱더 기세 등등하게 자신은 5인 미만 업체라고 계속 우겨되는 것이었다. 사장은 관리자를 대동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이라고 하고, 알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일했던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로부터 받은 영문진술서를 입증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감독관은 내심 쟁점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는 게 좋겠다는 눈치다. 진술은 엇갈리고, 지리한 조사가 계속되었다. 급기야 사장은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다. “500만원으로 합의하고 모든 걸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구요.” 근로감독관의 면전을 벗어난 사장은 적당히 끝내자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빠져 나갈까를 고민하는 사업주들과의 관계에 있어 이러한 다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바였다. 어찌되었건 우리에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입증을 해내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근로감독과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양당사자간 주장이 다른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입증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여부를 심의해야 할 산업안전과의 담당감독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결과를 받은 후 조사하겠다며 진정을 취하하라고만 할 뿐 적극적인 조사를 피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양당사자의 진술은 엇갈렸고, 조사는 공전되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계속해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통보서만 몇 차례 보냈을 뿐이었다.

3. 우린 똑같은 인간이지요(2000. 7. 7.)

6월 28일 참고인으로 당시 함께 일했다는 일용직 여자근로자를 대동하여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참고자료1. 노동부 출석요구서], 이들을 찾을 길이 없었다. 이처럼 알리가 일하던 당시 함께 일했던 5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당장에 우리측 증인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우선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밧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밧은 현재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미 사업주를 위해 진술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꼭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국말에 능통한 방글라데시 국적 다른 노동자 던씨에게 통역 도움을 청하여 함께 공장 인근으로 찾아가 밧을 만났다.

공장에서 이야기하긴 불편하다고 하여 근처 치킨 집에 자리를 잡고 얘기를 시작

했다. 한국에 온 지 2년 조금 넘었다는 그는 사실은 알리의 진술과 같이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었고, 이름을 모르는 아줌마들이 서너 명 함께 일했었고 노동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에 사장과의 긴장 관계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수는 없고, 노동부에서 공장에 조사를 나오면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국적은 다르다 하더라도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생각해서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시작한 대화는 맥없이 끝나고, 일을 마치고 통역을 위해 특별히 야간에 함께 갔던 던씨는 돌아오는 길에 정말이지 대화가 안되는 친구라면 안타까워했다.

“우리가 과거 파키스탄하고의 전쟁에서 수십만의 형제들이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은 다 떠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흥분하는 던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아니, 손가락 짤려 봐요, 한국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파키스탄 사람 모두 똑같이 붉은 피가 나잖아요. 우린 똑같이 인간이라고요.”

저녁 11시가 넘는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겨우 소득이 있었다면 두어 달 전에 그만두었던 한국인 노동자 이대리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것이었다.

인천 부평구에 자리한 공장을 찾아가 이대리를 만났다. 피해자의 다친 손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사장이 몹쓸 짓을 하고 있다며 흥분했다. 그러나 그는 사실대로 진술해 주고 싶지만 자신도 현재 퇴직금을 조개어 받고 있으며, 이같이 사장과 미결된 문제가 있기에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일하던 아줌마들이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 수소문해보는 것이 나을 거라며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밧은 한국에 8년 정도 살아서 한국말을 아주 잘하고, 자신과 호형호제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3차 출석을 했으나, 밧이 사실대로 기재했다는 진술서에는 사장의 거짓진술이 그대로 영자화 되어 있었고, 밧과 호형호제한다는 이대리의 말이 떠올라 씁쓸한 기분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와야 했다.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바가 없었다. 사장이 진실대로 이야기하거나, 노동부에서 사실을 명백히 밝혀 처분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제 3부

가입류 신청, 합의에 이르기까지



제3부 가압류 신청, 합의에 이르기까지

1. 책임을 피하려 들지 말라(2000. 7. 8.)

서울 남산자락에 있는 파키스탄 대사관은 가정주택을 관저로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불법'이라는 신분상의 불안함과 힘든 노동에 째는 노동자들과는 달리 대사관 직원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을 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흐른 탓인지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송들이 상당수 있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다수 판례들이 2년 내지 3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얻게 될 수익에 관하여 인정하고, 그 나머지 노동기간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가동년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고 하였다. 이 손해배상액의 규모는 한국인이 받는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파키스탄에서의 기대여명, 평균임금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찾아간 길이었다. 소위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소극적인 다른 대사관과 달리 양팔을 걷어붙힌 젊은이가 의욕적으로 상담에 임해 주었다.

관련분야에서 일하는 자원활동가의 도움으로 법률절차에 앞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하기로 했다. 먼저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첨부하여 사장의 자택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냈고, 이 건에 대하여 동법원에서는 무공탁으로 가압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참고자료 2.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 그러나 시흥시 소재 공장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공장내 기계 등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에 있어서는 공탁명령이 나왔고, 보증보험을 통해야만 했다. 어찌되었건 가압류신청 건 모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를 하고, 유체동산가압류 건에 대하여는 집행신청을 하였다. 그래서 법원의 집행관들과 함께 시흥에 있는 공장에서 만나 소위 딱지를 붙이고 돌아옴으로써 가압류절차가 완결 지어졌다.

2. 가압류관련상담진행일지

7. 2. 가압류서류 작성 후 본인 날인 서명받음

[**참고자료 3. 부동산가압류신청서**]

7. 5. 주한 파키스탄대사관 다녀옴

[**참고자료 4. CERTIFICATE**]

(민사손해배상액산정관련)

가압류신청서류제출

(부동산-아파트-가압류, 채권-공장임대보증금-

가압류, 유체동산 - 공장내 기계 등 - 가압류)

7. 11. 공탁명령-보증보험증권-받음(수원지법)
7. 13. 서류보정 및 등록세 납부하라는 통보받음(서울지법)
7. 15.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류보완 및 등록세 납부완결함,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주소 보정 명령서 받음
8. 12. 공탁명령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교부받아 제출함

[참고자료 5. 공탁보증보험증권]

8. 17.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문 받음
8. 23. 채권 가압류 주소보정서 제출(제3채무자),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신청함
8. 24. 유체동산 가압류집행함. 채권 가압류 결정문받음

[참고자료 6. 채권가압류결정문]

최초 사장소유 3건의 물건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제출 후 주소보정, 서면보정, 등록세납부, 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유체동산가압류 건 집행에 이르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러 한여름이 되었다. 알리는 수차례 서류확인차 상담소에 왕래해야 했고,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노동부에 쫓아다니길 수십 차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출석요청을 받았다.

■ 가압류신청 관련 소요비용

구 분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인지대	2,500	2,500	2,500
송달료	13,560	29,380	13,560
보증보험		37,500	150,000
등록세	144,790		
집행수수료			79,500
등기수수료	6,000	4,000	
주민등록수수료		600	
합 계	166,850	73,980	245,560
총소요비용		486,390원	

3. 근로복지공단 대질조사(2000. 8. 22.)

사장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그 동안 자신의 사업체에 속했던 근로자수는 5인이 안된다 주장하며 노동부에서 최저임금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던 사업주는 대질조사에 들어가기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면전을 벗어나 따로 좀 보자고 했다. 이유인즉 여기저기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조치가 된 사실을 접했던 것

이다. 산재로 해 줄 터이니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산재로 끝내자는 것이다. 상황은 반전되었고, 제발 자택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만이라도 풀어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에 일단 산재문제를 해결하고 보자며 맞섰으나 막무가내로 극단적인 협박성 표현들까지 해가며 시위(?)를 해댔다.

4. 4개월 만의 최초요양승인(9월 말)

노동사무소에서 진정처리결과 회신을 받았다. 2월분 임금과 3월의 재해 발생일에 이르는 기간의 미지급임금 60여 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법정 기일내 지급치 아니한 사실과 근로자의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하였다 내용이다. [참고자료 7. 진정처리결과]

최저임금법상 미지급임금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리결과에 있어서 생점이었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나 임금대장을 작성치 아니한 사실로 입건하였을 뿐, 온전하게 실체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가 모든 결 개인화 조사가 금물살을 타고 진행되었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으로 산재법상 보험 가입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결론 뱂어졌다. 4개월 여에 걸쳐 지리하게 다뤄왔던 상시근로자수 문제가 풀리면서 결국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 동안의 수많았던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5.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바란다(10월)

노동사무소에 대하여 재진정하였다. 최초 핵심생점은 논외로 한 결론에 수긍할 수 없다는 점이며, 여전히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한 진정이었다.

2차 진정은 한번의 출석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담당감독관은 이런저런 회의를 느낀다면 씁쓸한 표정으로 간단히 진정인 조사를 마쳤다. 처음 진정에서 제기했던 2월분 임금과 3월 재해발생일에 이르는 임금, 월차수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임금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고 2차 진정을 취하하였다. 한편 1차 진정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수원지방검찰청을 내방하여 동 건에 대하여도 진정취하하고 노동부와 관계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6. 보험급여의 신청

산재는 이미 승인이 났고, 치료도 지난 6월 말일로 이미 종결되어 보험급여의 청

구만이 남았다. 10월 23일 청구서상 사업주확인날인을 받기 위해 시흥에 있는 공장으로 가서 사장과 대면했다.

철재지붕에 브력벽면 허름한 공장 옆에 콘테이너박스가 사무실이다. 그 동안의 첨예한 갈등의 긴장국면을 넘어서인지 사장의 얼굴은 진실을 감추려던 예전과 달리 분명 편해 보인다. 알리를 불법 고용하였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엘 다녀왔단다. 별금 350만원을 내라고 하여 아래저래 통사정을 해도 범칙금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푸념을 한다. 그리곤 수복이 쌓인 이런저런 체납통지서들을 보여준다. 참 힘들기도 하겠다 싶다. 요양비청구서, 휴업급여청구서, 장해보상청구서 등에 확인도장을 받은 후 인천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서글서글한 외모의 병원 산재담당은 자신들도 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곤, 주치의로부터 잘린 원손의 전체적인 장해진단을 받는 과정에 함께 해주며 세밀하지 못한 진단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붙여 정확하게 진단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사업주확인과 의료기관 확인을 마치고 난 후 곧바로 알리와 함께 안산소재 근로복지공단으로 향했고, 장시간 기다린 끝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로부터 장해심사를 받아 1차 보험급여청구를 마무리지었다.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중수지골에서 잃고, 3,4,5번 수지가 완전강직(운동불능)또는 운동범위가 제한된 상태의 장해를 입은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는 장해등급 제7급 7호로 결정받아 1일 평균임금의 616일분의 일시금을 장해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참고자료 8. 장해진단서**]

7. 평균임금의 정정신청과 손목수술

노동부 2차 진정이 원만히 해결되어 결과통보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저임금법상 임금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2001. 1.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였고 [**참고자료 9.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 2. 14. 정정함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참고자료 10. 평균임금 정정 통보**]

추가장해보상 및 휴업청구서는 본인날인만을 하여 제출하면 되었기에 본인을 내방토록 하여 청구서상 확인을 받았다. 그간 술하게 함께 했던 시간들이 1년이 되어 가고 있었다.

알리는 독일에 가고 싶다고 했다. 이유인즉 그곳에 가서 손목부위에서 수술을 함으로써 장해를 깔끔히 제거하여 마치 원상태와 같이 원래 손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술이 있다는 거다.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로 가는 항공료 등을 포함하여 수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했다.

8. 합의합시다(2001. 2. 13.)

가입류취하를 요구하는 사장의 전화가 사무실로 이동전화로 계속되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위로금조로 400만원이든 500만원이 되었든 합의하고 가입류를 풀어달라는 내용이었다. 심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빠른 시일(2주) 안에 가입류 취하가 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경매가 들어 온다던지 개인파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데, 그 동안의 행위가 괘씸하긴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그 사람 역시 망가뜨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민사상 손해에 관한 민감한 부분은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장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결국 당사자들끼리 만나 결정하게 하고 중간에 조정자의 역할로 갈음하기로 했다. 어차피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라고 하는게 신체감정을 통한 장해율이나 노동력 상실률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기준이 설정될 것인데, 특별히 정한 기준이 없는 만남이 이루어졌다. 사실 민사상 합의수준이 어느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해 보았지만 자세한 자료나 도움을 얻기가 곤란했다.

사장은 어려운 형편을 호소할 태세로 한 몇 치의 영수증을 내놓는다. 자살할 지경이란다. 최초 사장은 400만원을 제시하며 3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어림없는 소리, 알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고, 2배가 넘는 배상을 요구하였다. 중간에서 통역을 하여 서로의 심정과 상황을 전달하였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두 사람 모두 일어섰다. 앓기를 수 차례 결국 75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되었으나, 알리가 항공료를 추가로 요구하자 사장은 화를 내고 나갈 기세였다. 어이해야 하나.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 그 순간에 사장이 맘을 바꿔 비행기 티켓값을 추가 지급키로 하여 최종합의가 되었다. 결국 810만원을 3월 2일 일시불로 지급키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가입류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작성해준 가입류신청 및 집행취하신청서를 받아들고, 공증사무소를 향해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였다. 가슴을 조이며 3월 2일이 되었고 약속대로 실행되었다.

평균임금 정정에 따라 장해보상과 휴업급여 추가분이 알리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다. 알리는 "Thank you very much." 한마디를 남기며 상담소를 떠난 뒤 출국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여 1년 가까운 긴 여정이 끝났다.

애플로그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되어 있다. 본 사례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가 여부의 문제는 지난 해 7월 법개정으로 보험가입의무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는 사업체는 규모의 영세성으로 산재보험마저도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현실에서 확대 적용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작업장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제규정이 준수되어 국적을 불문하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왕의 발생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산재요양이 끝나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로부터 장해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 보면 외국인노동자들 거의가 수지나 손목이 절단된 경우로 장해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당일 장해 심사받는 전체노동자수의 5%는 되어 보였고, 또한 정형외과 등 병원을 방문해 봄도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입원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얼마만큼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를 많이 당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이란 국적의 한 노동자가 화학제품에 피제되어 한 눈을 실명하여 찾아왔다. 상담결과 이미 장해보상까지 받은 단계였는데, 아무리 검토 해봐도 법규에 미치지 못하는 장해등급을 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외국인 산재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이 결국 국가적 부의 유출이 아니냐며 많은(?) 장해보상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들을 보았다. 관계기관은 같은 그릇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철저히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들이 이른바 불법 고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거리고 있어 발생되는 산재은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법제가 정의에 맞게 포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지만, 노동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하여 최소한 적절한 보상이나 배상이 이루어져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3항에 따르면 외국인고용의 제한 규정이 있어 미등록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1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범칙금의 양정에 있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그 금액이 마치 고무줄 같다. 본 사례의 사업주도 특단의 방법으로 어렵사리 범칙금을 감액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 이같은 출입국관리규정에 따른 현실적인 병폐가 어느 수준일지 알 수 없다.

한편 대다수 재해가 작업장안전에 관한 제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발생한다고 했을 때, 사업주들은 노동부의 산업안전규정에 따른 처벌보다는 출입국규정에 의한 범칙금 때문에 거의가 산재처리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요양의료기관의 행정담당자들도 소위 당해 외국인이 불법이면 산재가 안된다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산재처리기피를 놓고 있다. 그렇다고 산재보험이 아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성실히 부담하는 사업주들을 보기란 거의 힘들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경우 노동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관련규정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즉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요양 신청한다는 것은 불법고용에 대한 범칙금 또는 벌금 또한 기꺼이 내겠다는 각오 없이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에 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최소한도의 노동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법무부에 대한 통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노동부출석 요구서

[참고자료 2]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

[참고자료 3]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참고자료 4] CERTIFICATE

[참고자료 5] 공탁보증보험 증권

[참고자료 6] 채권가압류 결정문

[참고자료 7] 진정처리결과

[참고자료 8] 장해진단서

[참고자료 9]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

[참고자료 10] 평균임금 정정 통보

[참고자료 11] 한국 산업재해 현황과 주요 재해원인

[참고자료 12]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2000년도 산재상담표

[참고자료 13] 산재노동자 사진

[참고자료 14] 산재노동자 수몬 씨(방글라데시)의 영문자술서

[참고자료 15] 중인 코심 씨(인도네시아)의 영문진술서

[참고자료 16] 수몬 씨의 COMPLIMENTS PAPER

[참고자료 17]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주소록

[참고자료 1] 노동부출석 요구서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우 425-020 경기 안산시 고잔동 526-1 / ☎ 0345-412-1955 / FAX 439-1902
근로감독과 과장 이○○ 근로감독관 김○○

문서번호 감독 68213 -
시행일자 2000. 6.

받음 모합마드 ○○ ○○ 귀하
참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번지. 전진상복지관 내)

제 목 진정사건 처리를 위한 참고인 출석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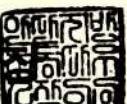
1. 귀하가 ○○산업 대표 '○○○'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진정인, 피진정인, 동료근로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임금 658,064원을 체불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며, 상시근로자수는 ○○산업 대표 '○○○'이 임금대장이나 근로자 명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2. 귀하와 귀하의 참고인 '○○○'은 진정인의 근무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고 주장(일용직 여자근로자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참고인 '○○○'는 진정인의 근무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아니하다고 상반된 주장(일용직 여자근로자 불규칙적으로 사용)을 하므로,

3. 사업장에 임금대장이나 근로자 명부를 작성·보관하였다면 확인이 가능하나, 동명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여, 귀하의 주장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피진정인이 일용직으로 채용한 여자근로자를 '2000. 6. 28. 17:00'에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지정일에 참고인을 출석토록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귀하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다만, 피진정인을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기준법 제115조 및 제47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 의법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참고자료 2]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

안양전·진·상복지관

우 430-014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 / (031) 443 - 2876

수 신 서울지방법원 신청과
발 신 전진상복지관 관장
참 조 본신청건의 담당판사님
문 서 일 자 2000. 7.
제 목 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의 건

1. 판사님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폐 복지관에서는 사회교육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위기의 전화(1366)와 성폭력상담 및 보호시설, 독거노인들과 행려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 청소년들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등과 더불어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이주노동자의 집에서 한국어교육, 의료상담 및 보조, 산업재해동 사고에 따른 법률상담 및 절차대행등 사회복지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3. 다름이 아니라 폐상담소에서 2000. 3. 22. 불의의 산재를 입은 파키스탄국적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결과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야간작업을 하던중 플라스틱 사출성형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기계를 만지던중 좌측손부위가 기계에 협착되어 엄지를 비롯한 손가락 2개가 절단이 되고, 나머지 두개마저 골절 및 근육이 손상된 관계로 한손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입게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당사자의 침착한 대처로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만 평생 한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와 그로인한 자괴감과 정신적충격으로 평생 불구의 삶을 살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피해당사는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채 1년도 안된 외국인노동자로서 한국어에도 능숙하지 못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 및 대처, 구조절차와 이에 따른 제반절차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사건의 당사자인 사업주 000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법무사사무실로 대리고 강제로 각서에 서명하게 하였고, 이를 공증받으려고 하였으나 공증받지 못하는 내용이어서 공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본인에게는 정신적지주이자 가치관의 가장중심인 알라신에게 차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강제로 하였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라는 족제를 채워 본국으로 강제로 송환조치하겠다고 온갖 인간이하의 욕설을 받아야 했고, 강제로 끌려다니면서 온갖 협박을 받았습니다.

4. 폐 복지관에서는 위 상담을 받고 비인간적인 작태를 보인 사업주에게 형사상 고소 및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건해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형사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부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재급여신청만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대한민국에서 일하여 돈을 모아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꿈마저 포기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독실한 종교인으로서 자신에게 온갖욕을 보이고, 자신을 평생불구로 살도록 한 사람이지만 용서하겠다는 인간애를 배풀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폐복지관은 피해자의 원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원만히 사건을 해결해줄 것을 수차례 걸쳐

부탁하였으나, 사업주는 불구자로 살아야할 피해자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듯 콧방귀만 뀌면서 해볼태
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사업주와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요지부동의 자세로 더 이상의 사태진전을
예상하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저희 복지관은 법에 의한 사건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높은 한국물가로 저축한 돈이 거의 없고, 저희 복지관의 기금으로 처리하려고 하였
으나 적립된 복지기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기금도 없는 관계로 이 또한
여의치 않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경제적 능력을 십분 감안하시어 무
공탁에 의해 가압류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전·진·상복지관 관장 이 금연 (인)

[참고자료 3]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000

경기도 안양시 안양4동 676-136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채무자 000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송달장소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00 산업

청구채권액의 표시

금 60,334,038원(별첨 손해배상액산출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일부액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지위

채무자는 00산업이라는 플라스틱사출성형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채권
자는 위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입사일(1999. 5. 17.)부터 손해발생일
(2000. 3. 2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재해를 입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근로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권자는 채무자와 1999. 5. 17.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75만원(소갑제1호
증 급여봉투)을 받기로 하고 줄곡 야간근로만 하여왔습니다.

피재당일도 주간에 근로하던 사람과 오후 7시 30분에 업무교대하고 평시와 같이 작
업하고 있던 중 같은 날 밤 12시경 플라스틱사출성형기계 사이에서 압출성형된 제품
이 기계에서 자동분리되지 않아 기계의 도어를 열고 펜치(집게)를 이용하여 제품을
빼내려고 하는 순간 기계가 작동되어 동기계 사이에 좌측손이 협착(좌수암궤박탈창,
좌제1,2수지절단, 좌제3수지절단, 다발성골절, 제3수지 중수골, 제4수지 중위지골, 중
수골, 제5수지 중위지골 등)되는 재해(소갑제2호증 재해부위사진, 소갑제3호증 진단
서)를 입었습니다.

피해 당일 채권자는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관계로 타인에 의해 구호조치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고통을 호소하다가 작업장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동료로부터 간신히 도움을 받아 부평구 부평동 소재 성모자애병원으로 옮겨져 요양가로 하였던 것입니다.

본 작업장의 기계가 노후하고 고장의 가능성은 염려하여 채무자(사업주)에게 수차에 걸쳐 기계의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하였을뿐더러 안전사고예방에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채 채권자 등 기간의 근로자들에게 노무를 제공케 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사업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안전보호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채권자는 1967. 8.(소갑제4호증 여권사본) 출생한 자로 이사건 사고당시인 2000. 3. 21. 현재 32세 8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한국인표준생명표(파키스탄 표준 생명표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나,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관계로 본안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정확히 산출코자 합니다)에 의하면 동인의 기대여명은 39.64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72세 남짓하게 생존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채권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월 75만원을 받으면서 기능공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바, 이와 같은 기초 사실과 부상의 부위 및 정도(채권자에 대한 종합평가표를 기초로 장해율을 산출한 결과 약 40.55%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본인의 과실을 최대 30%까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배상하여 할 금액은 별지 계산표(기대여명 대비 치료비 및 개호비, 일실수익과 치료비, 위자료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와 같이 금 60,334,038원이 된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채무자는 사업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안전보호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당연히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회사는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야 하나, 보험가입도 안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상태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체불임금 및 터무니없는 산재합의금만을 지급하고 사건 모두를 마무리 짓자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원만히 사건해결을 할 의사가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별지목록 부동산을 제외하고 별달리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불능의 상황이 예상되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외국인노동자로서 악덕사업주의 저임금의 횡포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의 생활비 충당으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상을 십분 장안하시어 무공탁에 의해 가압류할 수 있도록 판사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입증방법

소갑제1호증 재해부위 사진	1통
소갑제2호증 재해입은 본인의 전체사진	1통
소갑제3호증 진단서사본	1통
소갑제4호증 급여봉투사본	1통
소갑제5호증 여권사본	1통
소갑제6호증 진료비사본	1통
소갑제7호증 근로복지공단출석요구서사본	1통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부동산등기부 1통
3. 무공탁협조의뢰서 1통
4. 송달료납부영수증 1통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자료 4] CERTIFICATE



EMBASSY OF PAKISTAN
SEOUL

No.Cons-5/8/2000

July 5, 2000

CERTIFICATE

This is to certify that Mr. Mohammad ████████, a Pakistani national was an Electrical Supervisor in Pakistan before his arrival in Seoul in May 1999. During his stay in Korea, he worked as Machinery Operator in the Plastic Moulding Factory. The information given below is true and correct.

1. Average monthly salary of an Electrical Supervisor is Rs.15,000/- equal to US\$ 300/-
2. In case of injury/accident, the average compensation would range from Pak.Rs. 200,000/- to Pak Rs. 500,000/-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the injury. Regular monthly pension is also provided by the factory, whereas the insurance claim is given by the government.
3. Retirement age from Government or non-Government organization is 60 years. Average span of life is also 60 years for male and 65 years for female.
4. Basic Salary for labour worker in Plastic Injection Moulding Factory is Rs.200/- to Rs.400/- per day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work.
5. The current Bank Exchange Rate is US\$ 1 = Pak Rs. 52.00/- approx.



(Amjad Ali Sher)
First Secretary

[참고자료 5] 공탁보증보험 증권



증지일련번호 제 9810051호

공탁보증보험 보통약관 중요내용

<손해배상 담보용>

증권을 보증한 때에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제증의 금지】 보험계약자 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법정에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회사의 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원으로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상 및 대위】 1)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가집니다.

2) 피보험자는 위 1)의 권리로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증정의 조건】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증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손해보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모함마드

구하

면세
사업

증권번호 제 116-002-2000140 077 호

피보험자	██████	보험가입금액	₩20,000,000-
총보험료	₩150,000-	보험기간	*해당사항없음
영수보험료	₩150,000-	비고	사건번호 : 2000카단 10 016
위급부서 및 코드	116 강남지점 02-567-0021	모집대리점 BX8 증지 02-537-3442	
설명	1. 이 영수증에는 대표이사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이 영수증은 문자를 가림 경계 또는 임프로 기재한 것은 무효입니다.		위 금액을 보험료로서 영수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120-81-13002 전화번호 : 3671-7000

2000년 08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
S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183 34
국내 우편

■ 대표이사 사임의 사실이 인식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기간이 정정된 것은 무효이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이외의
기재내용이 정정된 경우에는 증권발급부서에 사실이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내용이 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6] 채권가입류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17단독

결정

사건 2000카 181 채권가입류

채권자 모함마드 ○○○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의 136 전진상복지관내 이주노동자의 집

채무자 ○○○
서울 용산구 원효로
송달장소 : 시흥시

제3채무자 1. ○○○
시흥시 과림동
2. ○○○
시흥시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입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임대차보증금

청구금액 금 30,000,000 원

이유 이 사건 채권가입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311-052-20000002 ○호)을 제출 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4.

판사 ○○○



별지

가입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참고자료 7] 진정처리결과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우 425-020 경기 안산시 고잔동 526-1 / 전화 031-412-1955 / 전송 439-1902
근로감독과 과장 : 이 근로감독관 : 김

문서번호 감독 68213 -

시행일자 2000. 9. .

받음 모함마드 귀하
참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번지, 전진상복지관 내)

제목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

1. 귀하가 ○○산업 대표 '○○○'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귀하에 대한 임금 658,064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근로자의 임금 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동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귀하가 지급 받지 못한 금품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적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참고자료 8] 장해진단서

장해진단서		(뒷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12 01-1234567
주소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최제 1. 수지성관 (증수증 1/3) 최제 2. 수지성관 (증수증 1/3)	부상(발명일) 년 3월 1일 ① 초진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2. 년 3월 2일
장해부위	최제 3. 수지성관 (증수증 1/3) 최제 4. 수지성관 (증수증 1/3)	② 치유일 (상병이 완치된 날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 3. 년 8월 20일
기준장해 (질병포함)	③ 기준장해 (유.무) 발생시기 년 월 일	기준장해상태
④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⑤ 장해상태(모든 임상증상 등 장해상태를 상세히 기재(필요한 경우 도표, 그림으로 표시)) 1) 최제 1. 수지성관 (증수증 1/3) 2) 최제 2. 수지성관 (증수증 1/3) 3) 최제 4. 수지성관 (증수증 1/3) : 15도 ~ 20도 4) " 근기지 " () : 15도 ~ 20도, 15도 ~ 20도 5) 최제 5. 수지성관 () : 15도 ~ 20도, 15도 ~ 20도 ※ 관절운동장애, 척추 및 사지마비장애자는 해당소견서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⑥ 향후장해 상태에 대한 의견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단기간(6개월정도)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원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청구서 작성 충무 절수 확인 증·지 결정통지서 작성 철재		
※ 전단서 작성시 유의사항 "장해상태"란에는 1.부상부위 및 정도 2.그동안의 치료내용, 수술명 및 경과 3.현제의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4.현제의 장해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병적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정도 5.의학상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종결하는 경우 악화되어 단시 일내에 재요양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여부 6.향후 향상 또는 수시 개호의 필요성 여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2급 60g/m ²)		

[참고자료 9] 평균임금 정정신청서

평균임금정정신청

신청인

* 성명 ○○○ * 국적 파키스탄

* 여권번호 A1234567 * 생년월일 1965. 1. 1.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

위 신청대리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 031-443-2876

신청취지

위 신청인 ○○○의 기적용 평균임금 26,373원 63전을 최저임금법에 의거 정정하여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원인

1. 당사자

위 신청인 ○○○(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산업(대표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0. 3. 21. 발생한 재해로 귀 지사에 최초요양신청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을 받고(갑제1호증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 2000. 3. 22.부터 동년 6. 27.까지 요양하였던 파키스탄 국적 근로자이고, 신청대리인은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에서 노동문제 상담을 맡고 있는 상담원입니다.

2. 근로관계

피재자는 1999. 5. 17. ○○산업에 입사하여 월급여 750,000원을 받고 근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재자의 근로시간은 매일 19시 30분에서 익일 오전 08:30분까지 일주당 주 6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재자는 1일 4시간의 시간외근로와 7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고, 토요일(1일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일)의 경우 8시간의 시간외근로와 7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3. 신청이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재자는 2000. 5. 17.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여(갑제2호증 진정서), 2000. 9. 본 진정건이 미결된 채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갑제3호증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피재자는 본 결과에 불복하여 2000. 10.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임금의 합계금과 월차수당의 도합금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2차 진정을 제기하여(갑제4호증 2차진정서), 최저임금법에 의거 지급받지 못한 1999. 9. 1.부터 2000. 3. 21. 까지의 임금 860,000원이 확인되어 이를 사업주 ○○○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입니다.(갑제5호증 진정사건증명회신, 갑제6호증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갑제7호증 통장사본)

4. 결 어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피재자는 ○○산업 근로당시 월급여 750,000원을 받았으나, 이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임이 밝혀졌고,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확인한 바대로 1999. 9. 1.부터 2000. 3. 21.(총 203일)까지 860,000원이 피재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일할계산할 경우 1일 4,236원 46전이 합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재자의 기적용 평균임금을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서류]

- 갑 제1호증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 갑 제2호증 진정서
- 갑 제3호증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 갑 제4호증 2차진정서
- 갑 제5호증 진정사건증간회신
- 갑 제6호증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 갑 제7호증 통장사본

2001. 1. 22.

신청인 ○○○ (인)

신청대리인 ○○○ (인)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 귀하

[참고자료 10] 평균임금 정정 통보

"근로자에게 행복을 실직자에게 희망을"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우 425-801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0-1 한국감정원 3층 / 전화 (031)405-879275 / 전송 (031)405-8862
보상부 부장 ○○○ 차장 ○○○ 담당 ○○○

문서번호 보상 6607 -

시행일자 2001. 2. 10.

받 음 MOHAMMAD

참 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외집)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	
번			공	
호			람	

제 목 평균임금 정정 통보

귀하께서 우리지사에 제출한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평균임금은 당초 2000. 9. 8 요양결정당시 기본급이 80만원으로 책으로 산정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귀하께서는 2000. 11. 4에 사업주로부터 임금추가분을 지급 받았음이 확인되어 이를 종합한 결과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기 통보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기지급된 바 있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차액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 정정내역 -

성립번호	사업장명	재해자명	주민등록번호	재해일자	평균임금	
					정정전	정정후
260-52-02 63	○○산업	MOHAMMAD ○○○○○○	670 01-72 005	2000.03.21	26,373 원 63전	28,961 원 71전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실직고통, 산재아픔, 채불임금 근로복지공단이 도와드림니다"

[참고자료 11] 한국 산업재해 현황과 주요 재해원인

한국 산업재해 현황과 주요 재해원인 -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재발생 현황

연도	1999	2000
제해자수	55,405 명	68,976명
사망자수	2,291 명	2,528명

■ 재해자는 제조, 건설업이 전체 재해의 68% 차지

* 제조업(48%), 건설업(20%), 기타산업(17%)

* 사망재해는 건설업이 25.5%, 제조업이 24.1% 차지

■ 산업재해 현황 관련기사

하루에 7명 사망, 180여명 상해, 그 중 반 이상은 영구장애. 지난해 (1999년)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 숫자다. 선진국보다 10배 높은 수치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욕망일 것이다. 민중은 빈부, 계층, 인종의 차이를 떠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지니며 이는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많은 국가들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부분이 공공의 책임 아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99년 10월 20일(수요일) 한겨레 <지구촌 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전수경씨는 "노동자의 산업재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당연히 인정해야 할 직업병이나 산업사고등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관련 업무를 공정히 수행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00년 5월 10일 한겨레

[2000년도 산재 상담표]

연번	성명	나이	국적	업종	근로자수	재해 경위	형평, 장해	결과	비고(문제)
1	나힐 1	34	스리랑카	플라스틱사출	6	기계 고장수리중 협착	수지절단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수: 5인이상 여부가 생점
2	사니 25	파키스탄	위와같음	3	안전장치미작동	수지절단	상대 행정소송中 사장과 합의종결		
3	마크 39	필리핀	섬유	20	풀체부하	무릎골절	산체처리	회사-보험급여	수급통장 압류
4	나힐 II	32	스리랑카	플라스틱사출	7	안전장치미작동	수지절단	산체처리	병원-치료잘못
5	데레사 31	파키스탄	위와같음	8	위와 같음	수지절단	민사합의(타단체)	상담소전문성 要함	
6	산주 29	스리랑카	섬유	13	원단풀러에 손이 감김	수지운동장애	연락두절		
7	롯풀 28	방글라데시	비금속제조	2	압착기에 협착	수지절단, 강직	민사합의, 미결		
8	황 36	베트남	프레스	4	안전장치미작동	피부결손	회사자체처리		
9	바트로 35	몽골	프레스	18	위와 같음	수지절단, 강직	산체처리	직당히 합의후	강제출국 의도
10	아지 32	스리랑카	섬유	15	원단(200kg)이동중 멀어짐	발목골절	산체처리	병원-업무태만	병원-재처리
11	호세인 29	이란	유리제품설치	9	유리설치중 깨지면서 다침	손목신경손상	회사 - 공상처리		
12	사킬 27	방글라데시	플라스틱사출	10	안전장치미작동	수지절단	회사 - 공상처리		
13	자안 42	스리랑카							
14	비블 28	방글라데시	프레스	65	안전장치 오작동	수지절단, 강직	산체처리	회사- 처리지연	
15	윤득희 35	베트남	플라스틱사출	7	기계 결함	수지절단	연락두절		
16	아크람 35	파키스탄	플라스틱사출	7	안전장치미작동	수지절단	산체처리, 합의		
17	무스타 32	스리랑카	의류(봉제)	1	미성기계에 손목다침	손목신경손상	휴업지급		
18	존 27	방글라데시	CNC	45	물건이동중 멀어져 끼임	수지절단	보류	병원-비협조 등	
19	아준 24	네팔	화학	15	유해화학물질노출	두통, 수면장애	처리내용無(연수생)	관리업체 업무태만	
20	까르끼 36	네팔	프레스	4	기계 결함(오작동)	수지절단	산체처리증		
21	칼리드 32	파키스탄	플라스틱사출	3	안전장치미작동	수지운동장애	분인연락두절		
22	모사람 29	방글라데시	섬유	13	풀려 협착	수지절단	보류		
23	수몬 24	방글라데시	프레스	70	기계 결함	손목부위절단	산체처리증	민사합의 후 출국	

[참고자료 13] 산재노동자 사진



☞ 수지절단 산재를 입은
스리랑카 노동자 니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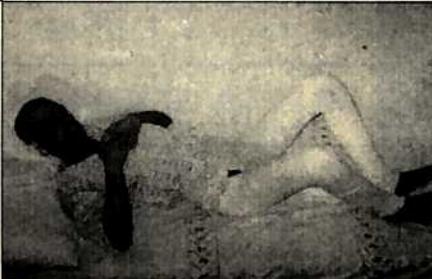
손목부위 절단 산재를
입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수문



☞ 수지절단 산재를 입은
파키스탄 노동자 사니



화학물 폭발 화재로
산재를 입은 파키스탄
노동자 아리프



☞ 수지절단 산재를 입은
베트남 노동자 홍

[참고자료 14] 산재노동자 수몬 씨(방글라데시)의 영문자술서

Statement of Sumon

My name is Suman. I come from a poor family of my country, Bangladesh, and I am the only source of income of my family. I come to Korea to earn the livings for everyone of my family. But unluckily, my fortune betrayed with me. I lost my valuable asset, my left hand, what is irrecoverable by any means.

I am unable to prosecute my whole life normally. I got that accident while I was on my duty with machineries. I am not responsible for this unwanted events anyway. It happened due to some troubles of machines. I with my colleague informed our supervisor twice about the fault of machines. But he did not care of us, furthermore he kept us involve in work in this same situation. Thereafter, I stracked up by machine. My left wrist was crumbled into dust before my colleague pressed the switch of the machine by his foot. I lost my hand because of the negligence of supervisor. I do not have the normal capacity of doing work. They were not only taken my hand, but also depriving me from my proper compensation. Please help me! Show me the right way for my survival of this hard work. I will be grateful to you forever.

Date

2000년

Signature

MD SUMON

[참고자료 15] 증인 코심 씨(인도네시아)의 영문진술서

Statement of Kosim

I am Kosim. I come from a poor family of Indonesia. I have come to Korea to earn some money for better Living. Sumon is a good and jolly boy and he is also like my friend. He and I were working together in the same machine.

I am experienced, so I always run the machine with carefully though it is a very old machine. So the machine always give some troubles. I noticed the problem to supervisor before Sumon got accident, but he continued us working without talking any adjustments. Within a few minutes Sumon got accident. The machine got compressed pressured automatically before I turned on switch by foot. Sumon got a measurable life due to the carelessness of supervisor. Please try to help him to get his legal compensation.

Date

2000년

Signature

 <kosim>

[참고자료 16] 수몬 씨의 COMPLIMENTS PAPER

Compliments Paper

My respectable elder brother,

Firstly you take my deeply honour.

When my hand was cut down by press, from then my mind has broken. I felt that I am a useless person in this world. I guessed that my life has damaged. When my manager deceived of my right, I got very upset to my own.

But I get a new life for your help. It was impossible for me to get that money without your help. Really, you have a great favour of me. I am deeply indebted to you and I appreciated to you. I will remember you ever and forever.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Really you are a great minded person. Always I Will respect you, and I will blessed for you to my God, and I Wish you happy and long live in this world.

Sincerely yours,

Sumon

[참고자료 17]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주소록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주소록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서울 종로구 연건동 32 T.02-747-6831 F.02-747-6832 천리안, 진보넷JCMK

회원단체

경기북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 센타 / ☎031-878-4090 ☎878-4092 ID 천 kaneohe
의정부시 가능1동 363-1 법전 B/D 304호 480-101
변호사 손광운 / 사무장 오재성

경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 ☎055-277-8779(팩스겸용)
경상남도 창원시 도계동 101B 3-1L 641-540
소장 이철승 목사 / 상담실장 김창수

경산 외국인노동자 교회 / ☎053-815-7842(팩스겸용)
경북 경산시 삼북동 275-2 712-020
대표 조규천 목사

광주 외국인근로자 선교회 / ☎062-951-7993 / ID 천 KAFW
광주 광역시 광산우체국 사서함 130호 506-600
소장 석창원 목사

광주 외국인노동자 센타 / ☎062-971-0078 ☎971-0079 / ID 천 warmwind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16-11 506-302
소자 이철우 목사 / 담당 두정란

구미 가톨릭 근로자 센타 / ☎054-452-2314 ☎452-6929 / ID 천 kc2314
경북 구미시 원평 1동 374-2 730-011
대표 모경순 / 담당 김명순

대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 ☎053-256-0696 ☎425-0696
대구광역시 남산4동 2635-5 대구 구민교회(내) 700-444
대표 김경태 목사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 ☎051-802-3438 ☎803-9630 / ID 천리안 noja
부산시 진구 전포4동 193-9 송광도매회집 4층 614-044
대표 정귀순 / AWN편집장 정윤식

부산 가톨릭 노동 상담소 / ☎051-293-6403 ☎293-6404 / ID 천 katol
부산시 사하구 신평 1동 259-1 3동 5반 604-031
소장 조옥종 / 담당 김광준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 ☎032-654-0664 ☎668-0077 / ID 천 bmwh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 2동 184-5 22동 6반 421-112
소장 고태훈 / 사무국장 이란주

서울 외국인노동자 선교센타 / ☎3672-9472 ☎744-3594 / ID 천 smcw
서울 종로구 창신 2동 130-102 110-542
소장 최의팔목사 / 사무국장 최진영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 / ☎031-756-2143~4 ☎757-8093 / ID 천 smwh94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7288-11 461-192
소장 김해성목사 / 사무국장 이상린

안산 외국인 노동자 사목센타 갈릴리아 / ☎031-494-8411 ☎494-8483 / ID 천 galilea
안산시 원곡동 843 인세연립 다동 201호 425-130
소장 데니스 신부 / 담당 김현숙

안산 외국인노동자 선교센타
☎031-493-7354 ☎493-7353(팩스겸용) / ID mworker
안산시 원곡1동 829-1 우성연립 나동 306호 425-131
소장 조정현 목사/ 담당 최경숙

안산 외국인노동자 센타 / ☎031-492-8785 ☎492-4722 / ID 천 shimter
안산시 원곡동 749-2 425-130
소장 박천웅 목사/ 사무국장 노종남

안양 전진상 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 ☎031-443-2876 ☎446-2876 / ID 천 aycc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 430-014
관장 이금연 / 담당 이순희, 박점관

엠마우스 / ☎031-257-8501 ☎257-8535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100번지 440-150
대표 죄반니 / 담당 이성희

여성교회 여성이주노동자 센타 / ☎2266-1850 ☎2263-2048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100-391
원장 곽경량

외국인노동자 살롱의 집 / ☎031-594-5821 ☎594-582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 2리 산 33-9 472-840
대표 이정호 신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 ☎795-5504 ☎749-6055 / ID 천 a0011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303-2 한성빌라 401호 140-011
소장 박석운 /부소장 석원정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 / ☎708-4181~3 ☎708-4186 / ID 천 kcwu8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 연합회관 1110호 110-740
총무 김은주 / 담당 조진경

평화의 집 / ☎720-7994 ☎720-3771
종로구 사간동 57번지 110-190
소장 김영환 목사 / 담당 장성은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 ☎779-0326 ☎779-0327
서울 종구 을지로 2가 164-11 4층 100-192
사무국장 김미선 / 총무국장 구정희

진천 복지선교센타 외국인형제의집 / ☎043-533-4102 ☎0434-534-6251 / ID jinchun0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9-1번지 365-800
소장 이창언 사무국장 김홍식

인천외국인노동자센타 / ☎032-766-4484 ☎032-766-4484 / ID iworker
인천시 동구 화수2동 35-47 401-022
소장 박경서 목사 / 담당 신은아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 ☎055-388-0988(팩스겸용) ☎ / ID yfwh
경남 양산시 북부동 204-7 626-030
대표이사 장효강 신부 / 사무장 이영화

일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 ☎031-908-5004 ☎ 02-2610-429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79-4 소장 김은규 신부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 ☎ 02-757-7388 ☎ 02-779-2609 / ID 천리안 bcej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 5층
대표 정영도 / 사무국장 정진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 ☎ 031-228-2789 ☎ 031-253-7184 ID 한메일 dangun-2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86-2 2층
담당 윤재훈

유관기관

대구 근로자 회관 / ☎ 053-253-1313 ☎ 255-4861 / ID 천 caa402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2가 35번지 700-192
담당 김윤조

인천 가톨릭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 ☎ 032-765-1094 ☎ 032-761-9546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 카톨릭 회관 내 400-090
소장 오경환 신부 담당 김마리아 수녀

창원가톨릭사회교육회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 ☎ 054-82-3737 ☎ 0551-61-7846 / ID 천 jch
경남 창원시 신월동 13-67 641-060
관장 꽈준석 신부/ 상담실장 주영

기장 외선협 / ☎ 762-0621 ☎ / ID 천 mamu
서울 종로구 창신 2동 130-102 110-542
회장 죄의팔 목사 / 사무국장 안성근

의정부 이주노동자 상담소 / ☎ 031-878-6926/6981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83-6
대표 함편의 / 담당 이미숙

안양 전·진·상복지관

● 안양 전·진·상복지관은

全(온전한 자아봉헌), 真(진실한 사랑),
常(항상 기쁨)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일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이웃에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돋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본 기관의 사업은

- ◎ 사회교육센터 - 비문해자를 위한 학교와 취미교양강좌
- ◎ 이주노동자의 집 - 외국인노동자 상담과 교육
- ◎ 나그네의 집 - 무료급식소,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 ◎ 위기의 여성 상담전화 1366
- ◎ 마라의 삶 - 여성 쉼자리
- ◎ 웅달샘학교 -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 ◎ 자활후견기관

● 함께 하고 있는 협의체는

- ◎ 한국 가톨릭 사회교육협회
-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 가정폭력상담소·쉼자리 전국협의회
- ◎ 이주·여성 인권연대